

고용관리책임자 대상 교육 실시 안내



전자카드제 및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의 의무와 그 역할이 강화되어 '2021년 고용관리 책임자 대상 비대면 교육'을 실시합니다.



신청대상 중규모* 또는 해당교육에 관심있는 사업장 (100개소 내외)

* 공사금액 50억 이상 100억 미만

신청기간 '21.10.11.(월) ~ 11.5.(금) (선착순)

신청방법 공제사업팀에 신청서 제출 (팩스, 이메일)

- (팩스) 0505-182-8331 (이메일) qyld53@cw.or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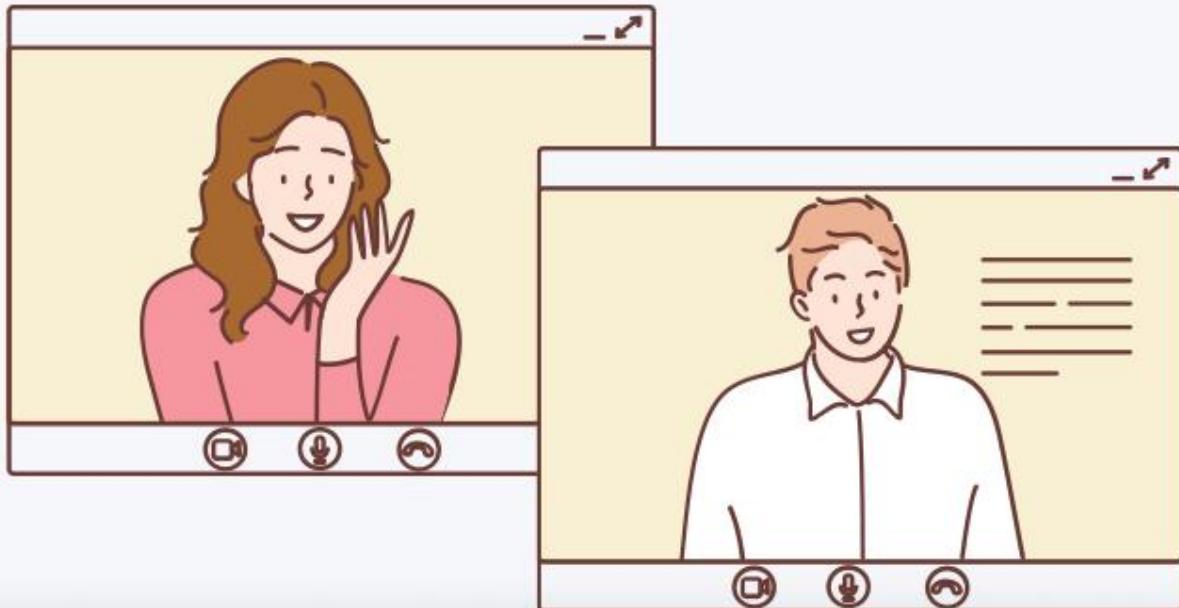
교육시기 '21.11월 중 (교육 신청서 제출 대상 세부일정 별도 안내)

교육내용 고용관리책임자의 역할 및 업무



고용관리책임자의 역할 [건설근로자법 제5조, 시행규칙 제2조]

- 1** 건설근로자의 모집·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
- 2**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- 3**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
- 4**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·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
- 5** 퇴직공제의 가입,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
- 6**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①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
 - ②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
 - ③ 법 제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
 -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



교육방법 교육자료를 활용한 공인노무사 비대면(화상) 강의 실시

교육수단 화상회의 플랫폼 'ZOOM' 활용

교육자료 공제회 대표 홈페이지 또는 퇴직공제 EDI 시스템 접속

→ 검색창에 '고용관리책임자' 검색

→ 자료실 내 '고용관리책임자 교육자료' 다운로드

공제회 대표 홈페이지 <https://www.cw.or.kr>

퇴직공제 EDI 시스템 <https://wedi.cw.or.kr>

기타문의 퇴직공제 EDI 시스템 내 퇴직공제업무 Q&A

또는 유선 문의(**02-519-2075**)